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0565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16.06.17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11.04

ohoh335@naver.com

미친고기

정보공개서

미친고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미친고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풍암신흥안길 25-14(풍암동)]

[대표전화] 1688-8692

[FAX] 062-655-8692

[가맹사업팀]1688-869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기	지	주 소				
	미친고기		광주광역시 풍암신흥안길 25-14(풍암동)				
미키크기기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	
미친고기	개인사업자		2016.10.21	오중일	1688-8692		062-655-8692
	법인등록번호	개 '	인사업자	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294-		-66-00159	

당사는 2016년 10월에 사업자등록번호(신규사업자, 대표자는 동일)및 사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미친고기]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미친고기	
상 호	미친고기 OO점	
상 표(서비스 표)		등록번호:4103303880000



	riting.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03,242	1,067	102,175	1,154,116	42,383	37,723
2022년	156,644	108,259	48,384	1,414,736	52,821	48,384
2023년	233,751	177,032	56,719	1,640,964	65,373	56,335

그 근거자료는 <붙임1>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 리시 H	A) =	원 기 (i)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오중일	대표	2016.02~현 재	대표	회사업무 총괄	
관련 임원	고 6 크	네표	2010.02 원제	415	의 기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주된 구(경)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대표)	[신정만국밥]	가맹사업경영	예정	신정만국밥 (등록번호: 20200854)라는 영업표지의 가맹 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 료일(가맹본 부의 사용기간)
미친고기 (상표권)	영업지역 내사용	출원:2014.10.01 등록:2015.08.25	출원:4120140039779 등록:4103303880000	· 오숫익	2025.08.25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가맹본부의「미친고기〕가맹사업 현황

1. [미친고기]을 시작한 날 :2016.06.21

(직영점을 시작한 날:)

2. [미친고기]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미친고기	미친고기	오중일	2016.02.01 [~] 현재	광주광역시 풍암신흥안길 25-14

3. [미친고기] 업종

영업표지	업종			
미키크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미친고기	기타외식	돼지고기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미친고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i>c</i> 2	2021.12.31		2022.12.31.			2023.12.31.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0	10	0	11	11	0	11	11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4	4	0	4	4	0	5	5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	1	0	1	1	0	1	1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3	3	0	4	4	0	4	4	0
전남	2	2	0	2	2	0	1	1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미친고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2	2	0	4	0	10
2022	10	1	0	0	1	11
2023	11	1	0	1	0	11

6. [미친고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당해 브랜드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사동/하리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	가명]점/직영점의	수
ੀ ਦ	구분 상호/이름 영업3	8 월표시	등록번호	현중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관계 인(대표)	[신정만국밥]	신정만국 밥	20200854	한식	0/1	0/1	1/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미친고기]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k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편 매출액(~		연간 ⁵ 매출액(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1	601,312	17,531	1,077,632	46,854	187,674	3,128	* 1 곳 산정제외
서울	0							
부산	0							
대구	0							
인천	0							
광주	5	661,218	19,738	1,061,054	26,526	389,858	12,183	* 1 곳



					산정제외
대전	0				
울산	0				
세종	0				
경기	1				* 5곳 미 만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4				* 5곳 미 만
전남	1				* 5곳 미 만
경북	0				
경남	0				
제주	0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의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을 산정하였으며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12개월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 위 매출 기재 내역은 가맹점이 배달영업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배달 영업 매출 까지 파악하여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가맹점 매출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미친고기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1개	1,59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7.13	人 rl.	7] 7 <u>]</u> .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	비고	
구분 수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끄	
광고	-		12,443	-	-	
판촉	_	_	_	_	_	
합계	_	_	12,443	_	_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미친고기	가맹본부
피 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 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19,300천원	



미친고기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2개월 소요



Ⅲ.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미친고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비용, 냉난방기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보증보험 가입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가입비	7,7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이 개점된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가맹 점 개점 전에 본 계 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는 위약금으로 함.
교육비	3,3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교육 시작 1일 이 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행사 비	3,3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영업개시 행사를 위 한 소요된 실제비용	

2)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5,0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상품대금 등 각종 대금 미지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예치대상이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금액은 피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9,300
가입비	7,700
(현금)보증금	5,000
교육비	3,300
개점행사비	3,3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면적: 99m²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및 간판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	62,700	2,090	착수금 40%(계약 체결 후 4일) 중도금 40%(공사 시작 후 10일) 잔금 20%(공사 마감일)	공사 전 계약 취소	간판5,500천원 포함
필수설비 (정착물)	협력업체	25,530	851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 취소	시설물 정착 시 반품 및 반환불가 별도-철거,수도 인입,전기증설, 외부테라스,슬라 이딩 창, 닥트시설, 가스 등
최초공급	가맹본부	4,400	_	물품 공급 1일	상품 미 공급	



상품비용			이전	시	
총계	92,630	3,088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의 경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m^2 당 440 천원(부가세포함)의 비용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2일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입지선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상권특성 및 주요시설 파악 →당사 및 가맹희망자 동의 시 확정 ※ 상권 및 입지분석은 전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책임 하에 선정되며 미친 고기 가맹본부는 조언 및 입지조건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입지 선정을 요구 할 수 있음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미친고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물품내역은 당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가맹희망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물품내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총액의 50% 분담 (가맹점 각각의 부담 은 매출액에 따라 분담)	분담내역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통보 후 14일 이 내	소되었을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에 따라 달라짐	분담내역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통보 후 14일 이 내	가 취소되		
계속가맹금 (로열티)	가맹본부	월 카드 매출액 2.2%	매월5일	_	후불적 성 격이므로 반환 불가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제 소요되는 비용	가 맹점사업 자에게 통보 후 1주일 이 내	교육이 취 소 되었을 때	교육이 시 행되었을 시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비용	협력업체	실제 소요되는 비용	간판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등을
						고려하여 결정
점포환경개 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해당없음	_	_	-	_	_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 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규정품목, 위생상태 등 조사	1회/월	1688-8692
회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회/분기별	1688-8692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 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 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 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미친고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미친고기]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3,300천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계약보증금도 5,000천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미친고기"의 지식재산인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간 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 2.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미친고기"의 상호나 상표 등 "미친고기"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 및 해지를 이유로 "미친고기"가 이미 제공한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미친고기에게 반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서류(계약서,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 5.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상품 및 제품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친고기"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7.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친고기"의 영업표지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미친고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 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미친고기]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미친고기]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미친고기]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니	용 !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미친고기						
명품삼겹살						
목살 스테이크						
항정살						
갈매기						
삼껍,목껍(삼겹200g+껍데기 250g/목살200g+껍데기						
250g) 껍데기						
막고기						
 쫄살						
<제한시간2시간>뷔페(막고						
기/쫄살/껍데기 무제한)				1회 위반:	구두 경고	
후식	왼쪽에 기	재된	이외의	2회 위반:	2회 이상	
라면	제품을 판	·매할	수 없음	서면 시정]요구	
치즈라면				3회 이상:	계약 해지	
양푼비빔밥						
누룽지						
고기						
냉면계절						
주류						
소주						
맥주						
청하						
복분자						
매화수						
음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도드람	12255B 2505 M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다른 가맹점사업자	과 광주식품으로 부터 공급받은 상 품 및 제품	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느 다르 가매저에 곧	시정의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 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미친고기		개별통지	
명품 삼겹살	10,000	"	
목살 스테이크	10,000	"	
항정살	11,000	"	
갈매기	11,000	"	
삼껍,목껍(삼겹200g+껍데기 250g/목살200g+껍데기250g)	20,000	n,	
껍데기	6,000	"	
막고기	16,000	"	
쫄살	7,900	"	
<제한시간2시간>뷔페(막고	9,800	"	
기/쫄살/껍데기 무제한)	9,000	"	
후식			
라면	2,500	"	
치즈라면	3,500	"	



양푼 비빔밥	3,000	"	
누릉지	2,000	"	
공기	1,000	"	
냉면계절	3,500	"	
주류			
소주	4,000	"	
맥주	4,000	"	
청하	5,000	"	
복분자	10,000	"	
매화수	5,000	"	
음료	1,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 · · · · · · · · · · · · ·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고기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미친고기	_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미친고기"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미친고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 다.]

7)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



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의 기간 [미친고기]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

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제1항의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제1항의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7조제1항의3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 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7조제1항의4
○ [미친고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7조제1항의5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 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7조제1항의6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표지규정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변경 사용하는 경우	제7조2항
2.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권 범위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하거나 허용 범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제9조
3.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교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제14조제5항
	제20조1항
5. 가맹점사업자가 교육 훈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교육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제23조
6.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을 위반한 경우	제25조
7. 가맹점사업자가 다수가 동의하는 광고계획에 동참하지 않거나 광고비의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제26조
8. 가맹점사업자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전단,카탈로그	
등을 자체 제작하여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제27조
판단되는 경우	
9.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및 제품을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변질,손상,유통기한 경과등의 상품 및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	제28조 제5항 및 제6항



10.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32조
11.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 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12. 가맹점사업자가 매뉴얼의 준수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제34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상품 및 제품을 임의로 구입하거나 품질검사에 불응 또는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품질관리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제35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제36조
15.가맹점사업자가 대금의 결제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제37조
16. 가맹점사업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38조
1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상당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가맹본부가 소집하는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제39조
1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서비스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40조 2항
19. 가맹점사업자가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41조
2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 양도 행위를 한경우	제44조 제1항
21.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3조
22.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 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31조22항
23. 가맹점사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점 개점승인이 개점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48조1항
24. 가맹점사업자가 각종 금전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제48조1항
25.가맹점사업자의 폭언 및 폭력으로 계약관계가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48조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득시계로 해시 사표	
Ţ,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제48조제2
	경우	항의1



_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8조제2
		항의2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제48조제2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항의3
ブ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사업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임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사임 기업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8조제2 항의4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제2 항의5
0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제2 항의6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8조제2 항의7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 리기 어려운 경우	제48조제2 항의8
Ò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8조제2 항의9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가맹사업과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51조3항
○ "미친고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51조3항
○ 기타 미친고기가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51조3항



재 조 정 절 차	동 의 절 차
계약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사업자에게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통지 → 가맹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효력 발생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수정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 약 체결(15일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가맹사업부 1688-8692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이 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교육 → 기존 계약 승계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 의 권리의무		대리운영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미친고기]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돼지고기를 굽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가맹사업부 1688-869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미친고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7:00~01:00(8시간)	주 6일. 월 24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부 1688-869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 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5명 이상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점사업자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청결(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월	본부 관리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1월	본부 관리팀	
품질관리(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월	본부 관리팀	
복장과 용모(10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복장 및	1회/1월	본부 관리팀	



	용모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확인			
회계관리(1항목)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1회/분기별	본부 관리팀	
	확인 및 서명 → 완료			
종업원 근무성적 평	담당자 매장 방문 → 근무성적평가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1회/1월	본부 관리팀	
가(4항목)	확인 및 서명 → 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미친고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세복 공고 → 가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전국단위 공동판촉 행사	팜플렛. 카달로그 제작비용 100%	상품의 할 인비용이나 제 공 하 는 경품 · 기 념품 등의 비용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가맹점별 매출액은 당사가 집계한 원·부자재의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그



비율에 따라 최종 분담금을 결정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촉활동을 위한 팸플릿 전단, 카탈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미친고기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제작하여야하며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미친고 기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가맹점사업자가 미친고기가 승인한 필수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하여 미친고기 또는 도드람과 광주식품부터 공급받지 않고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미친고기에게 위약벌로 금삼백만원(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미친고기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미친고기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미친고기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 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 삼십만원(300,000원)씩 미친고기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5)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위약벌 이외에 미친고기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6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53~52(2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51	[9~10p 참조]
가맹금 예치	- 본부 계좌로 입금 -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발행	D-50(1일)	[3 10p (4.1)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49~47(3일)	
인테리어 공사 (간판설치비)	- 공사 실시	D-46~6(40일)	
필수설비	- 냉장고 등	D-15~5(1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4~4(30일)	
초도상품	- 초도상품, 기타개점 비용	D-7~3(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



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기그저키	비용부담	刊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지급절차	제외사유	고
ㅇ점포의 시설,	ㅇ간판교체	ㅇ점포의 확장	ㅇ가맹점사업자	ㅇ점포환경개선	
장비, 인테리	비용	또는 이전을	의 비용 청구	일로부터 3년	
어 등의 노후	ㅇ인테리어 공	수반하지 않	(공사계약서 등	이내에 가맹	
화가 객관적	사비용(장비·	는 점포환경	공사비용을 증	본부의 책임	
으로 인정되	집기의 교체	개선 : 20%	빙할 수 있는	없는 사유로	
는 경우	비용을 제외	ㅇ점포의 확장	서류 첨부) →	계약이 종료	
ㅇ위생이나 안	한 실내건축	또는 이전을	90일 이내에	(계약의 해지·	
전의 결함으	공사에 소요	수반하는 점	가맹본부 부담	영업양도 포	
로 인하여 가	되는 일체의	포환경개선 :	액을 가맹점사	함)되는 경우	
맹사업의 통	비용. 단, 가맹	40%	업자에게 지급	가맹본부 부	
일성을 유지	사업의 통일		(단, 가맹본부와	담액 중 잔여	
하기 어렵거	성과 무관하		가맹점사업자간	기간에 비례	
나 정상적인	게 가맹점사		별도의 합의가	하는 부담액	
영업에 현저	업자가 추가		있는 경우 1년	은 지급하지	
한 지장을 주	공사를 실시		의 범위내에서	아니하거나	
는 경우	함에 따라 소		분할지급 가능)	이미 지급한	
	요되는 비용		ㅇ가맹점사업자	경우에는 환	
	은 제외)		가 가맹본부	수 가능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치>	
○ · · · · · · · · · · · · · · · · · · ·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있는서류첨뷔	
→ 3차에 걸쳐	
기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 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1.가맹사업의 통일 성 및 독창성유지에 대한 지도. 2.고객서비스, 영업 방식, 매뉴얼이나 상품의 사용 등에 관한 지도. 3.신규고객 창출 및 영업 활성화 방 법에 대한지도 등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1688-8692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요청 시 기간등을 고려하여 실비 산정.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1688-8692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미친고기]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_	_	_	_

※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미친고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실기교육 마케팅, 상품교육, 서비스 교육	실습교육 집단강의	오픈일 34일 이전	필수 교육
정기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교육실시 14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통지	가맹점과 협의하에 실시
재교육	가맹점 사업자 재교육(보수교육)	집단강의	재교육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육 실시	해당 가맹점사업자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미친고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30일(240시간)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규 교육	1일(8시간)	실비	가맹점과 협의하에 실시
재교육	1일(8시간)	실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교육을 소집(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 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3조 따라 기한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48조 제1항의 1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_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_	_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688-869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보공개서는**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재무 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